

화성도시공사 2026년 제2회 일반계약직(휴직대체)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

화성도시공사 2026년 제2회 일반계약직(휴직대체)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5월 11일
화성도시공사사장

1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구분	직종	직급	직렬	담당업무	선발예정인원	임용예정
일반계약직	휴직대체	라급	건축	건축기획, 건축시공, 안전관리 등	1명	2026년 6월 중
		마급	행정	사무보조, 예산회계, 고객응대, 민원접수, 대관업무 등	4명	

- 보 수 : 공사 보수규정에 의함(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)
 ※ 일반계약직 라급 보수 : 보수 하한액 금36,635천원 ~ 보수 상한액 51,290천원(12개월 근무기준)
 ※ 일반계약직 마급 보수 : 2026년 화성시 생활임금 적용(금30,321,720원, 12개월 근무기준)
 ※ 기본급여 외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초과근무수당 등은 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
- 근 무 지 : 화성시 관내 공사 사업부서
- 계약기간 : 임용일로부터 휴직자 복직 시까지이며 휴직 및 복직 현황에 따라 연장 가능(무기계약 전환 불가)
 ※ 최종합격자 임용등록 시 희망계약기간 접수(중복 시 최고득점자순 임용)

연번	업무분야	인원	계약기간	비고
1	건축	1명	2026-07-01~2027-12-31	최종합격자 합격순위에 따른 고득점자 순 계약기간 선정
2	행정	4명	임용일 ~ 2027-03-08	
3			임용일 ~ 2027-12-23	
4			임용일 ~ 2028-06-04	
			2026-07-02 ~ 2027-07-01	

-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) 09:00 ~ 18:00 (야간근무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가능)
- 보수는 1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계약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적용대상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
- 기타 인력운영 현황 등에 따라 임용일이 연기될 수 있음(최대 12개월)

가. 1차 전형 : 서류전형 (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)

- 관련분야 경력, 전공, 자격증, 법정 가점분야 등에 대해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
-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(동일단어 반복, 내용 미 작성, 욕설 등)

나. 2차 전형 : 면접전형

-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, 성실성, 용모·예의·품행 및 창의력·의지력·기타 발전가능성 평가(개별면접)
-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“보통(70점)” 이상인자 선발
(※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“미흡” 으로 평정 시 불합격)

다. 최종합격자 결정 :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,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- 서류전형 50% 및 면접전형 50%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
- 필요시 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 등)에 따라 임용 전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결격사유 미보유자에 한해 임용등록 시행

라. 예비합격자 결정

- 공사 「인사규정시행내규」 제1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되, 예비합격자는 직렬별 최대 3명으로 하며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.
- 예비합격자는 차점자순으로 함(유효기간 6개월)

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

가. 접수기간 : [2026. 05. 11.\(월\) 10:00 ~ 2026. 05. 22.\(금\) 18:00](#)

나. 접수방법 : 화성도시공사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

- 주소창 입력 <https://hu.recruiter.co.kr/career/home> 또는 [바로가기 클릭](#)

다. 시험일정 :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으며, 전형별 합격자 및 시행장소는 별도 통보함

원서접수		2026. 05. 11.(월) 10:00 ~ 2026. 05. 22.(금) 18:00
1차전형	서류심사	2026. 05. 27.(수)
	합격자 발표	2026. 05. 29.(금)
2차전형	면접전형	2026. 06. 04.(목)
최종합격자 발표		2026. 06. 11.(목)
임용예정		2026. 06. 중 ※ 공사 사정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(최대 12개월)

라.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1)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,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,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.
- 2) 직렬(분야)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므로 **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.**
또한,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 됩니다.
- 3) 경력 및 학위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, 제출된 증명서에 의하여 심사됩니다.
- 4) 필수자격요건 자격 증빙서류(자격증, 면허 등)는 반드시 첨부에 의하며, 제출 서류 암호화 등에 따른 열람불가 및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5) 응시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- 6) 지원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될 수 있습니다.

3 응시자격

가. 응시연령

-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공사 정년(만60세) 범위 이내인 자

나. 거주지 : 제한 없음

다. 결격사유

공통 사항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9.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11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※ 필요시 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 등)에 따라 임용 전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결격사유 미보유자에 한해 임용등록 시행

라. 분야별 자격요건

직렬	직급	업무분야	필수자격요건	비고
일반 계약직	라급	건축일반	<p>[아래 요건 중 1건 이상 충족, 관련분야 및 경력 참조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후 당해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자 2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. 상장기업 및 30인이상 사업체에서 당해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. 그예위각호의아는 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<p>*. 관련 경력 : 건축물 건설 및 운영관리 등 제반 경력 **. 관련 자격증 : 건축 분야 산업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(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아래 건축직렬 자격증에 한함)</p>	[필수자격증]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
	마급	행정일반	<p>• 행정, 사무분야 경력자 또는 사무분야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</p> <p>*. 관련 경력 : 사무보조, 예산회계, 고객응대, 민원접수 등 행정사무 유경험자</p> <p>**. 관련 자격증 :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, ITQ, MOS,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행정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</p>	-

※ 모든 자격요건 내용은 증명서에 기재된 바에 의해 인정함.(증명서 등 자격요건 세부 증빙자료 첨부 필수)

- 기술직 직렬 해당 자격증

직렬	해당 자격증				비고
	기술사	기능장	기사	산업기사	
건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구조 • 건축시공 • 건축품질시험 • 건축기계설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목재시공 • 건축일반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 • 건축설비 • 실내건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 • 건축목공 • 건축설비 • 건축일반시공 • 방수 • 실내건축 	

4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응시원서,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	원서접수 시 전산기재
2	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	채용접수 사이트 동의
3	관련분야 학위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- 성명 및 학과를 제외한 인적사항, 학교명, 학교마크 삭제 - 관련분야 학위 기재(박사/석사/학사/전문학사 등 구분필수) -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증명서만 인정(진위여부 확인 목적)	스캔 파일 업로드
4	경력증명서(영문인 경우 한글번역 첨부) 또는 재직증명서 일체 ※ 근무처, 직위(직급) 및 세부담당 업무, 주당 근로시간, 발급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- 세부 담당업무 등 증명서 상 반드시 기재, 상세내역 미기재 시 경력 일체 미인정 될 수 있음 (예시) 건축(건축직렬) 지원 시 세부 자격요건 내역 필히 기재, 경력증명서 내 단순 '건축' 등 업무 기재 시 경력 일체 미인정 경력증명서 내 '○건축물 건설' 등 업무 기재 시 경력 인정 ※ 발급자 서명, 담당업무 및 연락처 양식이 없을 시 수기 입력 가능 ※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건만 인정 - 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인정 불가 ※ 경력 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	스캔 파일 업로드 (자격요건 해당자 필수첨부)
5	채용자격기준 상 경력기업의 상장기업여부 및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※ 전자공시시스템, 나이스기업정보 등 상장기업여부 및 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※ 서류 미제출 시 전자공시시스템만을 활용하여 기업규모 확인 ※ 확인불가 시 경력불인정 및 최소점수 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	스캔 파일 업로드 (자격요건 해당자 필수첨부)
6	경력증명서 해당기간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※ [제출서류 4 경력증명서]와 별도로 필수제출 사항임	스캔 파일 업로드 (자격요건 해당자 필수첨부)
7	자격증 사본(필수자격요건 증빙서류 모두 포함) ※ 진위여부 확인기간이 존재할 경우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※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	스캔 파일 업로드 (자격요건 해당자 필수첨부)
8	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※ 제출처를 '화성도시공사' 로 공고일 이후 발급건만 인정	스캔 파일 업로드
10	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- 1365포털 또는 VMS포털에서 발급받아 제출	스캔 파일 업로드

※ [제출서류4] '경력증명서(또는 재직증명서)' 와 [제출서류6] '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' 는 해당자의 경우 각각 필수 제출사항으로 두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누락 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※ 임용등록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

5 채용서류 파기

가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온라인 접수 채용서류에 반환 의무가 없으며 접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부 파기합니다.

6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

가.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

-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자 비율은 법령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 할 수 없음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 5% 또는 10%씩 가산
-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, 각 전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합격(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)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보훈청에서 인정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업보호대상자	매과목 4할 이상 일 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만점에 각각5%, 10%씩 가산	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되는 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

※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

※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시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
나. 우수자원봉사자 가점

-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 차등 부여

구 분	금장	은장	동장	해바라기	기타
자격기준	기간 3년이상 누적 300시간 이상	기간 3년이상 누적 200시간 이상	기간 3년이상 누적 100시간 이상	기간 3년이상 누적 30시간 이상	이하
배 점	5점	4점	3점	2점	1점

7 기타사항

가. 지원서 또는 증명서류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, 출생년도 (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: [예시] **0708 -*****), 학교명,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* 단,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후 평가진행

나.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.

다. 필요시 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)에 따라 최종합격자 임용 전

결격사유 조회를 시행 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조회 시 임용 될 수 없습니다.

- 라.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마. 응시원서상의 각종 기재착오, 누락, 자격미달 응시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바.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.
- 사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될 수 있습니다.
- 아.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자. 각 전형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(www.hu.or.kr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차.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, 채용 시 자격제한,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카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1조(임원의 겸직 제한) 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임직원의 겸직을 금합니다.
- 타. 채용관련 비리, 부정행위,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,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(합격자 발표일 포함)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, 이메일(recruit1@hu.or.kr)으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.
- 파.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안내[붙임1]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, 지원요건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인사교육부(031-8012-776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붙임1)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

○ 편의지원 항목

장애유형 및 등급		편의지원 항목	
지체 장애	상지	공 통	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		장애정도가 심한 자	공통편의지원, 답안지 대필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공통 편의지원	
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자 / 심하지 않은 자	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	
뇌병변 장애	공 통		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	장애정도가 심한 자		공통 편의지원, 답안지 대필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	공통 편의지원
시각 장애	공 통		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	장애정도가 심한 자		공통 편의지원,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	공통 편의지원
청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자 / 심하지 않은 자		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	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		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	과민성대장증후군, 과민성방광증후군, 신장, 심장, 장루, 요루 장애 등		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
기타	임산부		시험 중 화장실 허용, 별도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 (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)

○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

구 분	주 요 내 용
대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·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기간 및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 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편의지원 신청 :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- 관련서류 제출 :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· 방 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해당 여부, 지원요건, 구비서류, 편의지원 항목을 확인 후 입사지원서 및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편의지원 내용 기재 (채용홈페이지 첨부파일 제출) - 증빙서류(의사 진단서, 의사 소견서, 장애인 증명서 등)는 스캔하여 입사 지원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제출(등록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· 의사진단(소견)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· 의사진단(소견)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. · 임산부의 경우 임신주수,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(예시) 상기인은 임신 ()주, 필기시험 예정일(0000.00.00)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,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·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 · 확대문제지 등 : 확대문제지(118%, 150%), 축소문제지(82%), 확대답안지 (118%, 150%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) ·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, 반드시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편의지원 신청서 서식_입사지원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
지원직종		시험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필기전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적성전형
지원업무분야		출생월일	
성명		전화번호 (보호자는 필요시 기재)	응시자 : 보호자 :
주소	□□□□□		
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신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일시적 장애 등 <상세기술>		
첨부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등록증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복지카드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유공자 상이부위 및 등급 확인 서류 <input type="checkbox"/> 의사 진단(소견)서		
편의 제공 요청 사항	문제지 (택1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문제지 (<input type="checkbox"/> 118% <input type="checkbox"/> 150%) <input type="checkbox"/> 축소문제지 (<input type="checkbox"/> 82%)	
	답안지 (택1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필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답안지 (<input type="checkbox"/> 118% <input type="checkbox"/> 150%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라비아 숫자 표기	
	시험실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 시험실	
	장애인 보조기구 (본인지참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조기구 명칭()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(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필요사항 :)	
	기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화장실 허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 제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성검사 시 필요사항 ()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공지	
※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
화성도시공사 채용시험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. 20 . . .			
성명(대리인) (서명 또는 날인)			
화성도시공사 사장 귀하			

